

심사보고서

【 ‘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-19’ 관련 재산세 감면 지원 동의안】

의안 번호	723
----------	-----

2022. 4. 25.
자치행정위원회

1. 심사경과

- 가. 발의일자 및 발의자 : 2022. 4. 13. / 남양주시장
- 나. 회부일자 : 2022. 4. 15.
- 다. 상정 및 의결일자 : 2022. 4. 25.

2. 제안설명 요지

가. 제안이유

- 「지방세특례제한법」 제4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5항에 의거 천재지변·재해 등 지방세 감면 필요성 인정 시, 지방의회 의결을 얻어 감면하고자 하는 사항.

나. 주요내용

- 착한 임대인 지원
 - 감면대상 : 임차인에게 상가·건물의 임대료를 기간 내 인하한 임대인
 - 가) 임대인 : 부동산임대업의 사업자등록을 한 부동산임대사업자
 - 나) 임차인 : 소기업(소상공인 포함) 또는 비영리단체
- 대상기간 : 2022. 1. 1. ~ 2022. 10. 31.
- 감면세목 : 건축물분 재산세
- 감면내용 : 임대료 인하액의 100%까지 인정

- 제외대상 : 임대인과 임차인이 특수관계인 경우
 - ※ 특수관계 : 직계존비속, 배우자, 배우자의 직계존비속
- 감면방법 : 직권 또는 신청(기간 내 미신청 시 감면 제외)

3. 검토보고 요지 (전문위원 서진원)

- 본 동의안은 ‘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-19’로 어려움을 겪는 소기업·소상공인을 위해 임대료를 인하해 주는 착한임대인에 대하여 「지방세특례제한법」 제4조제4항에 따라 의회 의결을 득하여 재산세 건축물분을 감면해 주고자 제출된 안건으로,

감면대상은 올해 1월1일부터 10월31일까지 임대료를 인하해 준 부동산 임대사업자 임대인의 건축물에 대하여 11월 한 달 동안 감면신청 접수를 받아 임대료 인하액의 100%까지 건축물분 재산세를 감면 지원하는 내용으로 소상공인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시키고, 사회적 고통 분담에 동참한 착한 임대인에게는 세제 혜택을 지원해주기 위한 사항이기에 타당하다고 판단됨.

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-19로 인한 그동안의 재산세 감면액은 2020년도 6,691건에 502백만원(토지+건축물)이고, 2021년도 1,532건에 254백만원(건축물 / 고급오락장 제외)을 감면해 주었으며, 2022년도는 건축물분에 대하여 약 275백만원을 예상하고 있음.

※ 2022년도 고급오락장에 대한 재산세 감면 제외

- 2021년 1년간(' 21.1.1. ~ ' 21.12.31.) 영업금지 된 사업장에 대해서만 한시적으로 적용함에 따라 과세기준일 기준으로 적용 불가 (예 ' 21.6.2. ~ ' 22.6.1.)

< 참고 자료 >

- 2021년도 착한임대인 재산세 감면현황 : 1,532건 / 254백만원

○ 2022년 예상 감면액: 275백만원

※ 건수는 전년과 동일하고, 재산세액 10% 상승할 것으로 가정함

2021년 지역별 감면 건수 및 감면액

읍면동	건수	세액	읍면동	건수	세액
와부,조안	89	14	별내,퇴계원	259	40
진접읍	174	26	호평,평내	206	42
화도,수동	262	46	금곡,양정	17	3
오남,진건	129	28	다산	396	55

□ 향후계획

- 안내문 발송: 2022. 7월

※ 발송대상: 재산세(건축물)분 납세의무자 전체(약 3만명)

- 감면신청접수: 2022. 11월

- 재산세(건축물분) 환급: 2022년 12월

4. 질의·답변 요지

○ 회의록 참고

5. 토론요지

○ 없음

6. 심사결과

○ 「원안가결」

7. 소수의견 요지

○ 없음

붙임 : ‘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-19’ 관련 재산세 감면 지원 동의안 1부.